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그린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제 운용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1) 기본계획을 변경 시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그린바이오기업의 일반·경영현황, 생산현황, 연구개발현황 등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5조)

- 1)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2) 그린바이오기업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6조)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함

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안 제8조)

-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육성지구 지정 해제 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1. 15. ~ 11. 29.) 진행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같은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2. 기업 소재지,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그린바이오기업의 일반·경영 현황
3. 생산량, 생산액 등 그린바이오제품·그린바이오소재 등의 생산현

황

4.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등 그린바이오제품·그린바이오소재 등의
연구개발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
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고서”라 한
다)와 서류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설립 연월일

3. 신고 연월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기업의 대표자
3. 휴업·폐업 등 기업 운영 상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이미 신고한 사항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휴업·폐업의 경우에는 신고서 대신 휴업·폐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법 제8조제1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5명 이상의 근로자(3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구성
될 것

나.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명 이상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
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물」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연구소 혹은 단체일 것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등에 그린바이오 분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 중에서 그린바이오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그린바이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라.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4.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3.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4.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
5.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창업 지원
6.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8.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
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3항에도 불
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만원)
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 22 조제 1 항	70
나.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 22 조제 1 항	7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연 락 처	(044) 201 - 2137